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0월 2일

나. 발 의 자: 남완현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남완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 교류·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허가와 사용료·감면·반환 기준을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년시설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자체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테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등포구도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22조 단일 조문에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 위탁운영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고, 청년인구 수는 여섯 번째로 많아 청년층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간적 인프라 확충과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영등포구는 2025년 1월 1일자로 ‘미래도시국’을 신설하고 그 하부에 ‘청년 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청년시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 기본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청년시설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청년시설의 체계적·전문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청년시설, 사용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는 청년시설 설치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4조(사용허가)는 구청장이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신청 절차와 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안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는 공익·시설보호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 시설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함.
- 안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는 허가조건 위반, 부정한 방법의 신청 등 부적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여, 건전한 시설운동을 도모함.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청년시설 사용료·수강료 납부, 감면 및 반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등)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 훼손 또는 분실 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변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안 제11조(자체운영규정)는 위탁운영자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행정 통제를 조화시키고자 함.
- 안 제12조(운영 위탁)는 청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년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단일 조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년시설 관련 사항을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사용허가 ▲사용료 및 감면·반환 기준 ▲사용자의 의무 등으로 구체화하여, 청년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9
----------	-----

발의연월일: 2025. 10. .

발 의 자: 남완현·이규선·김지연

이순우·정선희 의원 (5인)

1. 제안이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 교류·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허가와 사용료·감면·반환 기준을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청년시설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마.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자체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청년시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청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일 1일 전까지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교육, 행사 또는 회의 등을 우선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년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7조(사용료 등의 납부) 청년시설을 사용하거나 청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시설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교육, 행사 또는 회의 등 : 전액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행사 또는 회의 등 : 100분의 50 감경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한 경우

2.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및 그 자녀

④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각 시설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변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